

전주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나30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나3055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2. 16 선고 2019가단5351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계성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완수

변론종결 2021. 11. 10.

판결선고 2021. 12. 8.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2. 16. 선고 2019가단5351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제1심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훈, 판사 오창민, 판사 조지환